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83

발의연월일: 2021. 1. 5.

발 의 자:김정재·추경호·양금희

金炳旭・배준영・이종배

서일준 · 송언석 · 한무경

이주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방 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기술보증기금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보증연계투자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0호).
- 나. 보증연계투자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8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으 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을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	10
기금이 <u>신기술사업자의 유가</u>	<u>제28</u> 조의4제1항에 따
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	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
<u>라 인수하는</u> 것을 말한다.	<u>느</u>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수 있다.	<u>할</u>
<u>1. 주식</u>	<u><삭 제></u>
<u>2. 전환사채</u>	<u><삭 제></u>
3. 신주인수권부사채	<u><삭 제></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